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18일, 장종태의원 등 16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1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25. 2.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 2. 20.)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25. 2. 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장종태의원)

정부는 올해 경로당 주5일 급식을 실시하면서 식사 제공 일수 증가에 따라 필요한 급식 지원인력 추가 투입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이외에도 정부는 지역사회 장애인·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활동에도 노인일자리 연계를 활성화할 계획임.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노인일자리 세부 사업내용이 달라 경로당 급식 지원인력 수급 부족이 예상되며, 그 외의 취약계층 지원 관련 일자리들도 인력 배치에 대한 전국적인 공통 기준이 없는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력이 우선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노인일자리를 선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일자리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경윤)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노인 일자리 사업유형은 자원봉사의 성격으로 보고 있는 공익활동형과 관련된 것으로, 2022년부터 활동비가 최저임금 수준 아래로 떨어진 상황임.

노인공익활동사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우선지정일 자리를 선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경로당 급식 지원 등 우선실시 필요성이 높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중점적인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로당 급식 지원 일자리’ 추진현황을 보면, 식사제공 경로당

1개소당 급식 지원 일자리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나타나고 있기도 함.

노인 일자리 정책의 보다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우선지정일자리 대상사업을 ‘노인공익활동사업’에 한정할 필요는 적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하는 등 일부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공익활동사업’에서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자리를 선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도 하여금 우선지정일자리 관련 사업을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려는 것으로, 우선지정일자리 대상사업을 ‘노인공익활동사업’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 일부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함.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2.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노인 일자리 정책의 보다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우선지정일자리 대상사업을 ‘노인공익활동사업’에 한정할 필요는 적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하는 등 안 제15조의2를 수정함.

수정주요내용

가. “노인공익활동사업”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수정함(안 제15조의2제1항).

나.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를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우선지정일자리”로 수정함(안 제15조의2제2항).

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우선지정일자리 관련 사업을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안 제15조의2제3항).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5조의2제1항 중 “노인공익활동사업”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하고, 안 제15조의2제2항 중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를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우선지정일자리”로 한다.

안 제15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우선지정일자리 관련 사업을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설>	<u>제15조의2(우선지정일자리의 선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공익활동사업에서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자리(이하 이 조에서 “우선지정일자리”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u> <u>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를 고시하여야 한다.</u> <u>③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 노인공익활동사업에서 우선지정일자리 관련 사업을</u>	<u>제15조의2(우선지정일자리의 선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자리(이하 이 조에서 “우선지정일자리”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u> <u>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우선지정일자리를 고시하여야 한다.</u> <u>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우선지정일자리 관련 사업을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u>

	<u>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확에 반영하는 등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우선지정일자리 선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자리(이하 이 조에서 “우선지정일자리”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우선지정일 자리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우선지정일 자리 관련 사업을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5조의2(우선지정일자리의 선</u> <u>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u> <u>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u> <u>사업에서 국민의 복지 증진을</u> <u>위하여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u> <u>다고 인정하는 일자리(이하 이</u> <u>조에서 “우선지정일자리”라 한</u> <u>다)를 선정할 수 있다.</u> <u>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u> <u>따라 선정한 우선지정일자리를</u> <u>고시하여야 한다.</u> <u>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u> <u>고시된 우선지정일자리 관련</u> <u>사업을 제6조에 따른 연도별</u> <u>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우선</u> <u>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u> <u>한다.</u>